

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추진계획

I 추진배경

■ 구청장님 지시사항 (2015.03.02. 확대간부회의시)

- 공동주택의 재난예방 안전대책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강 필요

<p><최근 지시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안전처에 관련 문제 지속 제기할 것(2016.03.10.) ○ 주민의견 수렴 후 국민안전처에 대책마련 요구할 것(2016.03.14.) -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동 대표자 회의 개최 → 화재방지대책 안내 및 의견수렴

II 아파트 현황

구분	단지수	동수	세대수	비율(%)	비고
전체	260	1,550	118,470	100	20세대 이상 아파트
피난시설 미 설치	83	850	68,458	57.8	'92.10.월 이전 허가된 아파트

III 문제점

1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 및 법제화 곤란

■ 92년 이전 준공 아파트, 현행 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 설치 불가

- 발코니 경계벽 내력벽으로 시공되어 있어 철거 불가 → 경량칸막이 X
- 바닥슬라브 철거 불가 → 하향식 피난구 X
- 별도 공간마련 불가 → 대피공간 X

■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및 소급 적용 곤란 의견 : 관련기관

- 국민의 비용 부담 커 개정 곤란(반대의견 많음)
- 실효성 부족 : 설치비용 과다로 실제 설치 곤란 및 행정조치 시 주민반발 등

기관명	일시	법제화 및 소급적용 관련 의견	비고
국민안전처	2015.03.03. (안전처 방문)	- 국민의 비용부담이 커 개정 곤란 ※ 국민안전처 소관사항 - 개정에 따른 실효성 부족 · 법령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커 실제 설치 가능성 매우 낮음 · 또한 다수의 개별 거주지에 대한 피난시설 설치여부 확인의 어려움 · 미 설치에 따른 행정조치 등에 대한 주민 반발 등도 예상됨	소방제도과
	2015.09.15. (국정감사)	- 피난시설 설치 의무 소급적용 법제화 질문안함 - 현재 상태에서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필요	조승래 중앙소방본부장
	2015.09.16. (공청회)	- 현재 이용되는 피난시설 자체도 보완이 필요 - 모든 아파트에 설치토록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커 반대의견 많음 - 최고의 대책은 국민의 관심이며, 대피보다는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가 더욱 중요	이상규 소방제도과장
국토교통부	2015.10.22. (YTN 방송)	- 피난시설 설치 의무 소급적용 법제화 질문안함 - 안전교육 및 홍보가 중요	김경환 1차관
국회 (황인자 국회의원)	2015.08.24. (국회 방문)	- 법령 개정은 국민의 비용부담이 커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	선주천 보좌관
서울중앙지검 (형사 제8부)	2015.06.03. (지검 방문)	-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곤란 - 법률 개정보다 국민 스스로 필요성 인식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- 소화기 비치 등이 더욱 중요	이완식 부장검사

2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홍보강화 미흡

- 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에는 피난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,
- 현재까지도 소방관서의 교육 및 홍보는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 관리에 중점을 둠
- 언론기관에서도 여전히 피난시설이 있는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중점 보도

3 피난시설 설치비용 과다

- 작은 방 등 대피공간 활용(방화문 설치) : 100만원 이상
-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: 150만원 이상
- 화재대피함 : 300만원 이상

IV 개선대책 및 추진계획

1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재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

1-1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실시(4월)

- 대 상 : 강남구 고문변호사
- 내 용 :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시설을 모든 아파트(기존 아파트 포함)에 설치토록 법령 소급적용 가능여부
- 활 용 : 자문결과와 주민의견 수렴 결과 법령개정이 가능(필요)하다고 판단될 경우 →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령개정 협조 요청(5월)

1-2 아파트 화재안전 자체 안내방송 실시(4월)

- 방 법 : 아파트 방송시설 이용 주민대상 안내방송
- 횟 수 : 총 9회 (4월 매주 토요일·일요일 각 1회)
- 내 용 : 피난시설 설치 필요성 및 종류, 설치비용, 관리방법 등 안내
- 안내방송(안) 붙임 참조

1-3 2016년 동별 대표자 등 관리자 교육 실시 → 의견수렴(5월)

- 대 상 : 아파트단지 동 대표, 관리소장(270단지/ 1,744명)
※ 상반기 교육 시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 관리자 적극 참석 유도
- 일 정 : 상반기 (5월), 하반기(10~11월)
- 내 용 : 아파트 화재안전 문제점 및 대피사례 교육, 피난시설 설치 필요성 안내
피난시설 설치의무 법제화 찬성여부 의견수렴 등

2 국가적 차원의 홍보강화 및 대책 마련 요청

2-1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교육·홍보 요청(3월)

- 국민안전처, 국토교통부, 서울소방재난본부, 강남소방서, YTN 등
- 최근 피난시설 이용 피난사례
-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위험성과 피난시설 설치 필요성 안내
- 피난시설 설치권장 및 설치방법 안내에 중점

<최근 추진사항>

- 아파트 화재안전 사업관련 후속보도 등 검토 요청 →YTN(2016.03.02.)
- 「안전한 사회 만들기」를 위한 업무협약 시 우리 구 추진계획 제공 및 후속보도 검토 요청
- 추가 대책마련 및 지속 추진 요청 →국민안전처, 국토교통부(2016.03.07.)
- 기존 아파트에 적용 가능한 피난시설 개발 및 국가적 차원의 홍보 등 대책 마련 및 지속 추진

2-2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요청(5월)

- 개정검토 법령 : 건축법 시행령 46조(방화구획 등의 설치)
- 법제화 요청 관련기관 : 국토교통부, 국민안전처

3 경제적인 피난시설 개발 및 보급

■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기술 실증연구 추진 → 국토교통부 대책건의(7월)

- 내 용 :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기술 아파트 현장 적용
- 목 적 : 기존 아파트에 설치 가능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피난시설 개발
- 활 용 : 기존 아파트에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기술 적용 중앙부처 건의

4 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 및 스티커 제작 홍보강화

■ 국민안전처 제작 「아파트(공동주택) 화재안전 매뉴얼」 제작(4월)

- 부 수 : 13만부
- 활 용 : 아파트 전 세대에 배부/ 각종 교육 및 유형별 재난안전 훈련시 활용
※ <화재시 안전한 대피요령 및 대비방법> 스티커 2만매 추가 제작 활용

V 행정사항

■ 부서별 단위과제 세부 업무추진(재난안전과, 주택과)

구분	단위과제	추진시기	주관부서 (담당자)
1-1	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실시	4월	재난안전과 (김승훈)
2-2	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요청	5월	
1-2	아파트 화재안전 자체 안내방송 실시 및 의견수렴	5월	주택과
1-3	2016년 동별 대표자 등 관리자 교육 실시 및 의견수렴	5월	
2-1	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교육·홍보 요청	3월	재난안전과 (강신욱, 박원천)
3	경제적인 피난시설 개발·보급 및 국토교통부 건의	1~7월	재난안전과 (김태정)
4	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 및 스티커 인쇄 및 배부	4월	재난안전과 (김은정)

붙임 : 아파트 자체 안내방송(안) 1부.

아파트 자체 안내방송(안) :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

-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안전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지난 2월 25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세대간 경량칸막이를 뚫고 대피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.
- 세대 밖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아파트 발코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 것입니다. 대피 후 아파트 내부의 불길은 견잡을 수 없이 커져 조금만 늦었어도 일가족이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.
-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<세대간 경량칸막이>나 <세대내 대피공간> 등의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
- 그러나, 우리 아파트는 1992년 이전에 지어져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한 대피방법과 대비요령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.
- 화재 발생시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연기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외기에 접한 방이나 발코니에서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이때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아야 합니다.
-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평상시 화재와 연기로부터 보해해 줄 수 있는 세대내 대피공간을 설치해 화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.
- 외기에 접한 방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면, 화재시 방화문이 설치된 방을 대피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.
-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와 대피공간을 모든 가족이 확인하여 화재시 피난에 이용합시다.
-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.